

# 고양화수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2006. 04. 10. 개정  
2007. 06. 26. 개정  
2009. 04. 08. 개정  
2010. 04. 20. 개정  
2011. 02. 18. 개정  
2011. 05. 19. 개정  
2014. 12. 10. 개정  
2015. 07. 03. 개정  
2018. 08. 05. 개정  
2019. 04. 25. 개정  
2019. 07. 11. 개정  
2019. 09. 24. 개정  
2020. 05. 26. 개정  
2021. 12. 22.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범위】** 본 규정은 ‘고양화수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 ①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와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2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4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교원3인, 학생3인, 학부모 2인, 전문가 1인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를 대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
2.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경기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내용
3. 기타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되어 수정해야 할 제반 사항 등

### 제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회의소집】 사안발생 시 위원회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 【규정 제정·개정 절차】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구성 및 운영】

- ① 학생 선도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교원 8인, 지역위원(학부모) 2인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 ③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담당부장이 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교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학생생활담당부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위원: 각 학년 부장 6인은 교원위원, 학부모 대표 2인은 지역위원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제11조 【위원회 개최】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

### 제1절 권리와 의무

#### 제13조 【권리】

- ①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②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③ 모든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④ 쉬는 시간·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⑦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⑧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 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⑨ 소년 미혼모·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
- ⑩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 ⑪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 ⑫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제14조 【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43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의무】**

-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 ⑦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 ⑧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 제2절 기본생활

### 제19조 【생활】

-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 제20조 【예절】

-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 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 ④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제21조 【이성교제】

- ① 교내·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 ②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 ③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④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제22조 【출입의 제한】

- ① 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 제3절 용의복장

### 제23조 【두발】

- ① 두발의 길이, 모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두발은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 제24조 【복장】

- ① 복장은 규제하지 않으며 학생의 개성에 맡긴다.
- ② 개인의 청결을 유지한다.
- ③ 등·하교 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타 의류(외투, 목도리, 스카프 등)를 착용할 수 있다.
- ④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 입고 필요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제25조 【신발 및 가방】

- 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높은 굽, 뽀족한 끝, 금속 장식 등)
- ② 가방은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하되, 학생의 자율에 맡긴다.

#### 제26조 【화장 및 용모】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을 할 수 있다. 단,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제4절 학교 내·외 활동

#### 제27조 【등·하교】

-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 ② 보호자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하교 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28조 【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 제29조 【수업시간】

- ①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 제30조 【수업 외 시간】

- ① 실내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지 않는다.
- ③ 화투·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제31조 【공공기물의 파손】

-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 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2조 【환경 및 청소】

- ① 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 제33조 【봉사활동】

-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 ② 자발적으로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4조 【기타 교내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들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일과 시간 이외 교내에서 학생들이 모임을 하고자 할 때
- ②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③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④ 일과 후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35조 【학교 외 활동】**

-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 ②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행동한다.
-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술, 담배(전자담배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 ⑦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정보 통신**

**제36조 【사이버생활】**

-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유포, 비방(악플)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 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 ④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37조 【정보통신기기】**

- ①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여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수업 중에는 전원을 꺼놓고 쉬는 시간과 그 밖의 시간에는 사용예절을 준수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휴대전화기를 휴대할 경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에 통보하여 사용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절 환경과 안전

### 제38조 【음식물】

-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②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 ③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 제39조 【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한다.

- ① 일반쓰레기
- ② 재활용품
- ③ 음식물쓰레기

### 제40조 【소지품】

-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데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사탕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 ④ 교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41조 【안전】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 ③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 ④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 제4장 학생자치활동

### 제42조 【학생 자치활동 지원】 ①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②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을 월 1회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

### 제43조 【학생 자치활동 조직】 ① 학교장은 전교어린이회, 학급어린이회 등이 다양하게 조직되도록 지원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 부서 조직은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학생의 직접투표로 임원을 선출한다.

**제44조 【학생 자치활동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 교사를 배정,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담당교사는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③ 학생자치활동 부서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 【학생 자치활동 의견 반영】** ①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결과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 및 활동상황을 수시 검토하여 학교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② 학생자치회 대표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기당 1회 이상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6조 【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7조 【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8조 【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49조 【관장사항】** 어린이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제50조 【학급자치회 임원】** 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제51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각 부서 부장과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 기능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2.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3.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대의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교장과 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6.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52조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1. 각 부는 총무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두며,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결산보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의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53조 【학생총회】**

-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 ② 학생총회는 학생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 【직무 및 선출】**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학생총회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③ 입후보 자격 및 자격 박탈
  1. 후보자는 본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되, 성적 등의 이유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2. 징계 등을 이유로 학생(급)자치회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구성원의 합의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자격 제한 기준 마련한다.
  3. 이하 상세한 내용은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①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 ②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 ③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 ④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 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 ⑥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6조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본인의 의사 및 경우에 따라 학교장의 지명으로 지정한다.
- 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인권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장 학교생활인권지도

### 제1절 생활지도

**제57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수업담당교사가 직접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③ 안전 및 생명 존중·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한다.
- ⑥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58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도 및 선도한다.

**제59조 【사제동행 생활지도】** 학생의 생활교육은 교사가 직접 진행하며 체벌은 금한다. 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할 때에는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 하여야한다. 인권친화적 프로그램 수행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명		내 용
성찰 중심 활동	제1활동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1)마음일기쓰기 (2)사과편지쓰기 *양식을 끝까지 다 채워서 쓰기 *다 쓴 후 담임교사, 부모님 확인받기
	제2활동	잠시 마음 다스리기	30초 멈춤
과제 중심 활동	제3활동	글쓰기	(1)독후감 쓰기 (2)명심보감 쓰기 *양식을 끝까지 다 채워서 쓰기 *다 쓴 후 담임교사, 부모님 확인받기
	제4활동	자기 주도 학습하기	일주일 학습 계획(계획서작성)→실천→학습 일지 작성 →담임교사, 부모님 확인받기
참여 중심 활동	제5활동	웰빙 도우미 활동	교내 봉사활동계획(계획서작성)→실천→봉사 일지 작성 →담임교사, 부모님 확인받기
	제6활동	캠페인 활동	캠페인활동계획(계획서작성)→실천→캠페인 일지 작성 →담임교사, 부모님 확인받기
<b>생활지도 세부 기준</b>			
<p>(1)학생들이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능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생활지도의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학생 스스로 생활지도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p> <p>(2)단, 행동의 경중을 따져 비교적 가벼운 잘못을 했을 경우 성찰중심활동과 과제중심활동 중 선택하여 하고 엄중한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참여중심활동 중 선택하여 하도록 함.</p> <p>(3)공정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생활교육프로그램 과제 수행을 하도록 함.</p> <p>(4)프로그램 제2활동을 제외한 다른 활동의 경우 공정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며 과제 수행 후 담임교사와 부모님의 확인을 받도록 함.</p> <p>(5)성찰중심활동·과제중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교과서, 공책, 준비물 등을 갖추지 않았음)</li> <li>-과제처리가 불성실함(숙제를 해오지 않음)</li> <li>-공부시간에 껌, 과자 등의 음식을 먹음</li> <li>-공부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친구들의 공부에 방해되는 행동을 함</li> <li>-공부시간에 학원숙제, 문제집, 교과서 외의 독서 같은 공부시간에 관계없는 행동을 함</li> <li>-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다님</li> <li>-책상 속, 사물함, 책상 주변 등 주변 정리가 불량함</li> <li>-쓰레기를 복도, 계단, 교실 바닥 등 아무 곳이나 버림</li> <li>-교실, 복도, 계단 등 실내 바닥에 함부로 침을 뱉음</li> <li>-친구와 싸웠는데 누군가 중재를 해도 진정이 되지 않음</li> <li>-복도에서 우측통행을 하지 않음</li> <li>-복도, 계단에서 뛰거나 장난을 하여 통행에 방해를 줌(행동 발견 즉시 '30초 멈춤' 을 하도록 할 수 있음)</li> <li>-욕, 바르지 못한 언어(은어, 속어)를 사용함</li> <li>-공부시간에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켜서 휴대전화를 사용함(사진 찍기, 녹음)</li> <li>-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서 장난을 함(반대의 경우에도 해당됨)</li> <li>-화장실에서 용무 이외의 행동(화장실 벽에 낙서를 함, 화장지에 물을 묻혀서 벽에 던짐)</li> </ul> </div> <p>(6)참여중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행동을 1회 했을 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구의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심하게 때림</li> <li>-친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을 함</li> <li>-친구나 하급생을 꺾어 금품이나 물건을 갈취, 불량집단에 유인함</li> <li>-일과 중에 교문 밖으로 나가거나 문방구, 슈퍼마켓을 출입함</li> <li>-선생님의 교육적 지시,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하며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함</li> </ul> </div>			

**제60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나 제 60조 각 호의 기준에 맞는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지며 가정에서의 학생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1조 【기타】** 본교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불명확한 내용은 일반 법리와 사회통념에 따른다.

## 제2절 선도규정

**제6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제64조 【선도의 원칙】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3절 학생선도

### 제65조 【징계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66조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하루 1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② 사회봉사
  -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 과정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67조 【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1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2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3	흥기를 휴대한 학생	○	○	○	○
14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15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16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7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8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9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0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21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3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24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5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6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27	일반인을 폭행한 학생	○	○	○	○

##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 제68조 【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나 위원회 개최 전에 의견서 제출을 원할 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69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제70조 【선도 내용의 통보】

- ①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이의제기·학교 내 재심의 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학교 내 재심의 절차>

단 계	내 용
이의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는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여 학교 내 재심의 청구서 작성·제출</li> <li>•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li> </ul>
재심의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li> </ul>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li> <li>• 재심의 절차는 제 69조 규정에 따른다.</li> </ul>
심의 결과 통보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통보 → 선도 시행</li> </ul>

- ③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2조 【재심의 요구】**

- ①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로 한한다.
- ③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제73조 【학생 선도의 결과 처리, 열람】**

- ① 선도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에 상담한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다.
- ② 선도 학생의 상담 및 선도 내용은 타 학생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74조 【보호자의 책임】**

- ①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소홀한 가정지도의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0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6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8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0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8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9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9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3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10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5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1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5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1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1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1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4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1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6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제1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고양화수초등학교

2019. 07. 1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제4조 【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 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

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 【개정안 심의 예외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학생 생활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나 가구의 명칭 등을 단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 ② 상위 법령(조례, 지침 포함)의 제·개정 사항을 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 제7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8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0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1일 개정하고 시행한다.